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19노134 강간
피 고 인 심 복 선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호(서울) 담당변호사 이영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3. 20:10경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1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 본 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합의하의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현저한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상당한 보상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을 선고 하였습니다.

3. 항소의 이유

가. 심리미진의 점

먼저 변호인은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시각을 2017. 2. 13. 20:10경으로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2017. 2. 13. 20:08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담은 문자 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증거목록 293쪽).

검사는 당시 서로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피해자가 한 진술을 근거로 범행시각을 위와 같이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지 불과 2분 만에 이 사건 강간범행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이유로 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여부와는 별개로 공판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의 제출에 대해 검사에게 석명권행사를 촉구하여 적극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서는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절차는 물론 그 판결에서도 전혀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이 부족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

일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원심이 양형사유에서 현저한 폭력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설이나 피해자의 몸에 있었다는 상처와도 명백히 배치되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막고 발버둥을 쳤다는 것은 '필사적'으로 반항했다는 의미인데 그 반항을 초래한 피고인의 폭력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못박은 원심의 판단을 피해자의 위진술과 과연 부합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신고 직후에는 현저한 폭력을 사용한 전형적인 강간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강조하였다가 시간이 경과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출석하여 변호인의 질문을 받자 그저 움직일 수 없었다면서 원심의 판단처럼 현저한 폭력이 수반되지 아니한 폭력으로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매우 완화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폭력이 사용됐든 어차피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두지 않은 현행법 규정에 명백히 배치되는 무리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실제 경험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구체성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의 핵심근거로 삼는 이상 구체적인 범행내용이 위와 같이 명백히 반복되고 달라지는 점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의구심을 부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④ 성관계 당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는 '벌레 같다', '재수 없다'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이순자 녹취록 57쪽) 수사기관에서는 '너무 아프다', '제발 하지 말라', '살려 달라' 등의 애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증거기록 45쪽). 신고 직후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신고 직전에 집요하게 대여금 변제 독촉을 하였던 만큼 반드시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강간죄의 전형적인 피해자로서의 언행을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면서, 상당 시간이 지나 그토록 원하던 금전을 지급받고 난 후 다시 예전처럼 성관계를 가져 오다가 출석하게 된 원심 법정에서는 평소 피고인에게 거리낌없이 자주 일삼았던 폭언을 연상시키는 언행을 범행 당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입니다.

원심도 양형사유에서 명시한 것처럼 현저한 폭력이 사용되지 아니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평소 오간 문자메시지들만 보아도 변덕이 심하고 지극히 감정적이며 폭언을

예사로 내뱉으며 피고인을 매우 경멸하는 태도로 일관했음을 잘 알 수 있는 피해자 입에서 '애원'으로 비칠 만한 표현들이 선뜻 나오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워 후자가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것임을 상식적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리 크지 않은 액수의 돈 문제 때문에 평소 찢찢 매던 피고인이 그런 폭언과 욕설을 내뱉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자체를 떠나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일 성관계를 마치고 피고인이 물티슈를 달라는 것을 거절하고 바로 씻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쪽) 원심 법정에서도 성관계 직후 직접 휴지로 성기를 닦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이숙자 녹취록 70쪽). 그러나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증거기록 90쪽)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출한 휴지에 남자의 정액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어 성관계를 마친 직후 휴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닦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이 DNA 감정결과와 피해자의 위 진술들이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반박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를 닦고 지한테 닦았을 수도 있어요.'라고 위 진술들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건 직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의 정확성 문제가 아니라 당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추정케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만일 공소 내용처럼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가 맺어진 거라면 피해자로서는 그 직후에 물티슈를 달라는 등의 피고인의 요청을 순순히 들어줄 리가 만무하고 마치 연인처럼 성기를 닦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스스로 증거로 제출한 휴지에 두 사람의 정액과 DNA가 함께 검출됐다는 것은 한 휴지를 순차적으로 함께 사용한 두 사람이 그 직전에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일까 하는 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성관계 직후 자신은 바로 샤워를 했을 뿐 피고인에게 물티슈를 주거나 성기를 닦은 적이 없음을 일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폭력적 성관계에 관하여 법정까지 일관된 피해자의 명확한 진

술이,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당연히 의심해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거나 증거평가를 그르쳐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⑥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나צל 준비를 하면서 '미안하게 됐다', '내일 100만 원 붙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5쪽)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옷 입고 나가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단지 나가면서 "아이 뭐, 걱정 마, 해결 다 될 건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이숙자 녹취록 60쪽). 수사기관 진술 내용은 성폭력 사실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사과를 하였다는 것인 반면, 법정 진술 취지는 쌍방간에 성관계 직전에 오갔던 차용금 반환 대화를 성관계 직후에도 간단히 나누었다는 정도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은 세 부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 직전까지 차용금 반환 독촉에 열을 올리던 부정적 감정이 상당하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의 현저한 폭력에 강하게 저항하였고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가 강한 반발심을 보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전형적인 성범죄 패턴을 담고 있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원심 법정 진술은 현저한 폭력이나 강한 반항은 거의 없었고 성관계 직후에도 돈 문제 얘기만 나눈 것처럼 되어 있는바, 독촉하던 돈을 돌려받게 된 후에도 법정에서 신고 내용을 다시 증언해야 하게 되자 무고 사실을 차마 자백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나름 진실에 가까운 방향으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을 수 없습니다.

나) 상처와 피해자 진술의 부합

원심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의 멍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부

합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반향을 억압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증거기록 19쪽, 137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후 3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멍 자국을 보여준 것이므로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 사건 범행일에 위 멍이 생긴 것으로 선뜻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팔 앞쪽의 멍만 촬영된 사진은 멍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경찰들에 의해 멍 사진을 찍은 후 나중에 보니 팔 뒤쪽으로 멍이 더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위 사진을 찍은 시점은 2017. 2. 16. 15:30경부터 16:20경까지인데(증거기록 11쪽) 피해자는 위 조사 전인 같은 날 13:52경에 이미 피고인의 처에게 '저 몸에 다 멍들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제11호증) 피고인에게도 경찰이 오기 전에 '니가 술먹고 온 날 내 몸에 다 멍들구 쓰레기'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증거기록 245, 246쪽).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몸에 멍이 든 것을 친구가 발견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이숙자 녹취록 41쪽).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팔 앞쪽의 작은 멍만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장 구석구석을 촬영하고 박스 안에 있던 휴지까지 증거로 수거해 간 경찰이 피해자의 팔 뒤쪽의 멍을 발견하지 못하고 팔 앞쪽의 작은 멍만 촬영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팔 앞쪽의 멍만 촬영된 사진은 팔 뒤쪽까지 멍들었다는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의 위 멍에 관한 진술이 전체적으로 진실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의 멍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가 지적하는 사정들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1) 원심은,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니고 피고인을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후 '좋은 감정에서 자연스럽게 몇 번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하여 진술반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2. 16. 처음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도 아니며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채무관계가 있는 오빠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증거기록 8쪽). 그러나 2017. 2. 23.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몇 번 가졌고 당시 서로 좋은 감정에서 한 것'이라고 하였고(증거기록 42쪽), 더 나아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번 사귀어보자고 하여 성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여 단순한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였음을 피해자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2017년 2월경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자세하게 묻자 피고인 일행을 만났다고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이 연락을 하지 않았고 먼저 전화를 하면 회의 중 또는 업무 중이라는 문자만 올 뿐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쪽) 피고인과 2017년 2월에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증거기록 129쪽).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이 2월에 가진 만남에 대하여 자세하게 묻자 다시 2월에 피고인, 천성관, 천성관이 데려온 지인과 술을 마셨음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30쪽),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쯤인 2017. 2. 10.에 피고인, 천성관과 함께 만나 본오동 소재 가요주점인 7080에서 술을 마셨음을 인정하였습니다(이숙자 녹취록 37쪽).

연인관계에서도 충분히 성폭력은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 관계 전반에 관한 (1)항에서와 달리 이 사건 발생 직전의 상황은 이 사건 당일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돈문제 때문에 한동안 만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 전에 두 사람이 다시 연락하고 만났는지, 얼마나 자주 어떤 형태로 만났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피해자는 그를 의식한 탓인지 범행 전 석달간 전혀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실제로는 더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출소로 와 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피고인이나 후배와 가요주점까지 가서 술 마시며 어울리는 행동을 보여주고 범행 당일에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하여 피고인을 집에 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심 재판부는 범행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였는바, 위 쟁점의 의미와 중요성을 피해자만큼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든지 아니면 유죄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적당히 논거를 끼워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3)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 외의 사정들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판단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① 피해자는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오게 된 2017년 초 전에는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이숙자 녹취록 10쪽),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을 처음 만난 2016년 9월 무렵에도 유흥업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합니다(증거기록 170쪽).

② 피해자는 첫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2017. 2. 13. 피고인이 먼저 연락을 하고 집에 오겠다고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3쪽), 그 후 이뤄진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증거기록 134

쪽).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하다가 돈 문제 때문에 한동안 만나지 않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장소가 하필 피해자 자신의 집인 탓에 피해자 스스로도 신고 직후에는 자신이 스스로 피고인을 집에 들였다고 진술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돈도 필요 없고 피고인을 처벌하고 싶으며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38쪽)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합의한 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증거기록 373쪽).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한 형사고소이지만 자신이 선불리 무고죄로 몰려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경찰 조사에서든 원심 법정에서든 국가기관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 만큼은 그 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던 충분한 돈을 받고 합의를 해줬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호소하는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후에 피고인과 다시 성관계를 갖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을 뿐 특별히 부정적인 사건(피고인에게 속아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추후 고소취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이 없었는데도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성폭력 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과는 전혀 별개로 고소취하서와 전혀 다르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진술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④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과 다시 합의할 때까지 피고인과 통화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신고 이후인 2017. 2. 21.에 피고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고(증거기록 별책 177쪽) 2017. 2. 24.에도 한차례 먼저 전화를 거는 등(증거기록 별책 180쪽) 신고 후 일주일여 기간 동안에만 세 차례나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후 가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피해자 스스로도 잘 알고 실제로도 사건 전후로 계속하여 오직 돈 독촉만 하였기 때문에 통화내역만 확인하면 바로 드러날 거짓 진술을 한 것인데도 원심 재판부는 진실을 암시하는 이런 중요한 정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 또는 합리성이 없으므로 피해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습니다.

라) 범행일로부터 3일 후에 신고한 경위

원심은,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3일 정도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3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범행일로부터 3일이든 3개월이든 3년이든 언제든 고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3일 동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한 언급은 신고 직전에 단 한번 보낸 문자메시지에만 나타날 뿐 다음날부터 앞서 오직 금전과 관련된 항의만 거듭하였다는 점이고, 이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같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피고인이 '내일 100만 원 부쳐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원심 재판부는 이를 명백히 놓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만, 한동안 서로 만나지 않다가 2017년 들어 두 번 정도 만나면서도 다시 돈 문제를 계속 독촉했고 자신의 집에 들어 돈 얘기를 하고 자신의 계좌번호까지 문자메시지로 보낸 직후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직후부터도 계속 돈 문제를 독촉하다가 강간범죄로 신고하게 된 것인바,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위와 같은 경위가 제대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3일 동안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는 머리가 아프고 몸이 늘어지는 등 몸이 피곤했던 것 외에는 특별히 신고를 하지 못할 만큼 몸이 아팠던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집안에 짐이 많아 집을 정리하는 것이 더 급했고 강간죄의 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앞선 진술을 번복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에 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그 다음 날에는 피고인의 거절에 화를 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3일 간 신고하지 않은 위와 같은 정황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초에는 신고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가 지인의 조언을 듣고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고를 결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마) 이 사건 이후의 관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종전까지 합의된 성관계를 맺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받아왔으니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성관계를 맺는 등의 행동이 자연스럽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강간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원심 판단의 오류

이 부분이야말로 원심이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못박아 놓고 무리하게 전개해나간 비합리적 궤변에 가까운 논거들 중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심은 종전까지 합의된 성관계를 맺어온 연인관계였다는 데에 방점을 두어 자신을 강간한 피고인에 대한 사법절차 및 형집행이 끝나기 전이라도 원만히 형사합의한 후 관계를 회복해서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면서 성관계를 맺고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받아오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반면 피고인이 엄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가 무고한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종전처럼 연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 연인관계가 얼마나 깊었던 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 폭력으로 강간한 남자를 실형 복역하도록 할 생각으로 형사고소를 해놓고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다고 판결도 선고되기 전에 다시 만나고 집에 들여 성관계하는 여자가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존재할지 상식적으로 지극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무고 여부를 떠나 예컨대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거액을 떼먹은 사기죄 등 다른 죄명으로 형사고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웠고 오래 만난 사이라도 상대방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할 정도의 중범죄자로 몰아세운 사람이 그 상대방을 다시 만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자신을 강간한 가해자와도 옛정을 생각해 쉽게 다시 성관계를 하며 사귄 수 있다는 원심의 위 논리는 강간 피해보다 훨씬 경미한 130만 원 차용금반환채무 불이행에 따른 재산적 피해를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판결의 앞선 유죄의 논리와 명백히 모순됩니다. 즉 거듭된 독촉에도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아 이 사건 당시에 금전 문제를 호소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순히 합의된 성관계를 할 수 없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놓고는 이 사건 후에 다시 원만히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피고인이 반박하자 예전에 성관계하던 연인관계에 있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궤변을 내놓는 것입니다. 1,000만 원 주고 한 합의가 관계회복의 매우 중요한 촉매제가 됐다는 게 원심 재판부의 뜻이라면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지나치게 금전문제로 환산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역으로 피해자가 결국 돈 문제 때문에 피고인을 영똥한 강간죄로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강간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였다 하더라도 다시 성관계를 하는 등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받아왔다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이나 건강에 대하여 걱정하고(증 제16호증, 증 제17호증) 피고인을 못봐서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은(증 제15호증)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원심 재판부가 저런 이례적인 근거를 제시한 데에는 두 사람이 맺은 연인관계, 특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에 주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자메시지나 변론종결 후 제출했던 민정란의 사실확인서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감정기복과 변덕이 매우 심하여 피고인을 평소 거칠게 몰아부쳤고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 처나 식당일로 알게 된 민정란에게까지 협박성의 메시지를 보낸 집요한 피해자의 특성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판단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 허위 신고의 가능성

만약 원심의 판시처럼 피해자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강간 가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낼 만큼 궁핍하다면 오히려 경제적 동기에 의한 허위 신고의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160만 원을 지원하였을 무렵인 2017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 사이가 회복되어 다시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했고(이숙자 녹취록 95쪽), 합의금 1,000만 원에다 자신의 채권금까지 수령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가 허위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신고가 허위 신고일 경우 허위 신고당한 피고인이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허위 신고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데, 허위 신고가 아닐 경우를 가정해도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와 재회하여 연인관계를 회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원심은 강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재회하는 경우는 쉽게 인정하면서 무고 가해자와는 그 피해자가 재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셈인데, 이러한 모순된 판단에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누차 강조하지만 정황상 피해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강간죄를 친고죄로 착각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진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라도 다시 관계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4) 소결

원심은 연인관계였다는 점과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다는 점, 허위 신고 당한 피고인과 다시 잘 지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는 등의 피해자의 행동들을 납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한 모순과 비상식적 오류가 있으므로, 강간 가해자인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의 피해자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간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습니다.

바) 허위 신고의 동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권 변제를 목적으로 허위 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점, ② 피

고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13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던 점, ③ 위 대여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에게 독촉하고 신고 당일엔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과 연락조차 어려웠던 점, ④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각 2분 전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범행 다음날인 2017. 2. 14. 피고인에게 일단 십만 원만 입금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성관계에 관한 일절 언급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이 천성관을 통해 130만 원을 송금하자 '고소하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네'라고 말한 점, ⑥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나 그 며칠 전 이 사건 성관계 등 자신의 고민을 듣던 친구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아 신고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⑦ 피해자는 피고인이 감옥에 가면 돈을 못 받을 것을 걱정한 점, ⑧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 흔쾌히 합의를 하고 바로 종전처럼 성관계를 하는 등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점, ⑨ 위 합의로 모든 형사절차가 종결된 줄 알았는데 다시 진행된다는 사실에 당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의 동기가 있으므로 이 사건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이 있습니다.

사) 소결론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범행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 팔의 멍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3일 후에 신고하게 된 경위와 강간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 등을 해 온 사정도 납득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동기도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간과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

2) 합의에 의한 성관계 가능성

가) 금전관계로 인한 갈등과 이성적 호감의 양립가능성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관계로 인하여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되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갖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관계로 인한 갈등이 격화되었다고 하여 이성적 감정도 함께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문제로 인하여 다투거나 격앙되었음에도 아래 사정과 같이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남아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예전처럼 술자리를 가지면서 친분을 유지했으며 이 사건 발생 직전인 1월 말과 2월 중순경에도 피고인의 친구들을 불러 함께 놀고 노래방에 가기도 하였습니다(천성관 녹취록 7, 21쪽).

(2) 피해자는 피고인과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2017. 1. 말경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출소에서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천성관의 원심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파출소에 찾아가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이런 일이 있는데 파출소에도 와주지 않는 것이냐”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파출소에 와주는 등으로 스스로 호칭한 ‘여자친구’인 자신을 챙기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연인이 섭섭할 때 하듯 화를 냈으면서도 정작 피고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낸 적은 전혀 없습니다(천성관 녹취록 6쪽).

(3)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면서 ‘안아보자’라고 했을 때 피해자는 ‘다 좋은데 숨 막히니까 저기 좀 떨어져 있으라고. 풀보기 싫으니까. 안지 말라고’라고 하였는데(이숙자 녹취록 43쪽)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으로서의 좋은 감정이 남아

있지만 금전문제 때문에 화가 났을 뿐이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 발생 3일 전인 2017. 2. 10.에 만난 술자리에서는 피고인이 따로 이야기 하자고 하자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둘이 따로 통닭집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29쪽), 금전문제로 갈등이 있던 시기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험담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추켜 세워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천성관 녹취록 8쪽)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게 하였는데 이성적인 감정이 없는데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남성을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원심 법원에서 천성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게 한 것인데 천성관이 부탁을 하지 안했더라도 집에 들이려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돈을 들고 가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았음에도 집에 들어오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이숙자 녹취록 43쪽).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음에도 연인관계의 감정들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처럼 이성간의 호감과 금전관계로 인한 갈등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문제로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를 가져온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한 잘못이 있습니다.

나) 피해자의 격앙된 감정

원심은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감정이 격앙되어 있으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감정 기복이 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단편적인 문자 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천성관 또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성격이 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하고 '좋게 이야기했다가 또 막 성질냈다 그런다'고 하면서 감정기복이 있는 편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천성관 녹취록 12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합의금까지 받은 후에도 피고인이 부탁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폭 되더라도 다시해보자' 등의 마치 파탄된 관계처럼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곧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 '고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증 제21호증).

또한 피해자의 심리상태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인관계에서의 애정과 금전관계로 인한 분노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욕설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다음날에는 '저나좀 꼭줘', '저나좀주면안될까' 등 전혀 격앙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태도에 연인관계의 감정이 금전관계로 인한 분노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격앙된 문자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여 성관계가 합의에 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 변제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정

원심은 변제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음에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심은 전혀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비합리적 추측과 상상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2월 달에 피고인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경찰이 자세하게 묻자 2월에 피고인 일행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1월말경 피해자가 파출소에서 싸우고 있을 때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자신에게 와 주지 않자 섭섭해 한 것은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이숙자 녹취록 36쪽), 2월 달에 만난 술자리에서는 피고인이 따로 이야기 하자고 하자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들만이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눈 점(증거기록 1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가 돈을 갚으라는 내용인지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일행과 가진 술자리도 금전문제 추궁만을 위한 술자리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간 가해자가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얼마든지 원만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근거인 종전의 깊은 연인관계때문에 돈문제로 일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도중에도 다급할 때 상대방을 찾고 술자리에서 서로 깊은 애기를 나누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얼마든지 합의된 성관계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 성관계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사정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얼마 전까지 연인관계였다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이를 낳아달라'거나 '좋아한다', '걱정마, 해결 다 될 건데'와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에 비추어 성관계가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성관계를 가질 때에도 가벼운 실랑이처럼 못 이기듯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점(이숙자 녹취록 58, 59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면서 '안아보자'라고 하자 피해자도 안는 것 자체는 좋다는 뜻을 밝힌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기 싫다'는 말을 가벼운 실랑이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숙자 녹취록 53쪽).

그리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몸이 눌린 것 외에 다르게 겹을 먹거나 그럴 만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이숙자 녹취록 54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면서 성관계에 관한 말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금전문제에 관하여 '걱정 마. 해결 다 될 건데.'라고만 말하였습니다.

위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바) 소결론

원심은 금전관계로 인하여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금전관계로 인한 갈등과 연인관계에서의 감정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문자메시지가 다소 격앙되었고 피고인이 마땅한 변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어려웠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연락하고 성관계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의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간과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검사의 입증이 부족한데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

다. 양형부당의 점

설령 원심의 판단과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합니다.

1) 동종 전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 사건과 같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증거기록 372~373쪽). 피해자는 본래 강간죄가 친고죄인줄 알고 고소하였다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모든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였고 원심 판단처럼 종전의 연인관계 덕에 피고인과 관계가 회복되어 종전과 다름없이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증 제1~17호증, 증 제20호증).

모든 형사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살아가던 피고인으로서는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을 받고 변호인이 증인신문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묻자 자신을 꽃병으로 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당황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한 것일 뿐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신문을 받기 전까지만 하여도 피해자는 선처를 구하려 하였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국가기관에 직접 대면하여 진술할 때에는 자신이 무고범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피해를 부각할 수 밖에 없는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다가 피고인과 있을 때에는 합의서를 써주었고 다시 법정에 나와 검사와 재판부를 대면하자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 증거들을 통하여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법정진술만 부각시켜 징역 2년이나 선고한 것은 양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 피고인의 사업 운영

피고인은 주식회사 태성신재생에너지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사업을 하는 시너지파워시스템으로부터 총판권을 부여받아 하이브리드 발전소를 분양 설치해주는

계약들을 성공리에 체결하였고, 각 계약금액은 10억 원 내외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주변의 사업 동반자들로부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피고인은 대표로서 피고인의 임무가 막중하여 피고인이 부재하게 되면 태성신재생에너지의 업무가 마비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되면 사실상 업체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각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직원들 가정 역시 생계수단을 잃게 될 것입니다.

4) 피고인의 가정관계

피고인은 아버지를 초등학교 1학년때 여의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출가를 해서 큰 형 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피고인의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입니다. 피고인이 실형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아들도 피고인과 같은 의지할 곳 없는 가정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는 위암으로 투병하시다 작년에 돌아가셨고, 피고인의 처남도 간암으로 투병하다 작년에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작년에는 어머니와 처남을 떠나보내고 피고인까지 교도소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디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푸시어 피고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 입증 계획

천성관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천성관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피고인, 피해자, 천성관이 2017. 1월 말경 함께한 치킨집으로 천성관이 피해자를 부른 것은 아니라는 점, 2017. 2. 10.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채무를 독촉하지는 않았다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성관이 피해자에게 부탁한 적은 없었다는 점 등을 밝혀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추가 입증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향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고 설령 견해를 달리하시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서울)

담당변호사 이영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귀중